

# 2015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

[2015.3.9.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적용]

공사규모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 의 합계액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고용 보험료 (노)×율	환경보전비 (재+직노+산경)×율	퇴직공제 부금비 (직노) ×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재+노+경)×율	이윤 (노+경+일)×율			
		(직노)×율 건축	(재+노)×율 산업 설비 (건축)	(재+노)×율 건축	(재+노)×율 산업 설비 (건축)				도급자관급 미포함	(재+직노)×율 a.(재+직노+도급 자관급)×율 b.(재+직노)×율×1.2					
5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9.6	9.6	5.2	5.2	[산재보험료] : 3.8	○ 09: 도로 (교량, 터널, 활주로) ○ 04: 플랜트 (발전소, 쓰레기소각로) ○ 05: 지하철 ○ 15: 철도 ○ 05: 상하수도 (폐수, 하수처리장, 정수장) ○ 18: 항만 (오막, 준설도, 방지막설치 필요시, 간척, 준설) ○ 08: 항만 (방지막 불필요시, 간척, 준설) ○ 11: 댐 ○ 06: 택지개발 ○ 08: 기타 토목(하천 등) ○ 07: 주택(재개발, 재건축) ○ 03: 주택(신축) ○ 05: 주택 외 건축 ○ 03: 조정, 기타 ※ 기타: 전문, 개보수 공사 ※ 적용제외: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수리공사	23	<재료비(도급자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5억미만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4.9 5억~50억미만 : 4.4	<추정가격>기준 50억미만 : 15.0 50~300억미만 : 12.0 300~1000억미만 : 10.0 1000억 이상 : 9.0			
	7-12개월 (365일)	9.2	9.2	5.2	5.2				[고용보험료] ○ 1등급: 1.39 ○ 2등급: 1.17 ○ 3등급: 0.97 ○ 4등급: 0.92 ○ 5등급: 0.89 ○ 6등급: 0.88 ○ 7등급이하: 0.87	일반건설 - 갑 : 2.93 - 을 : 3.09 중건설 : 3.43 철도·케도 : 2.45 특수 및 기타: 1.85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 원 - 을 : 1.99+5,499천 원 중건설 - 2.35+5,400천 원 철도·케도 - 1.57+4,411천 원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 원 50억이상	전문·전기·통신 소방·기타	건강, 연금보험료 (직노)×율
	13-36개월(1095일)	8.2	8.2	6.1	6.1										
36개월초과(1096일)	7.6	7.6	6.4	6.4	[건강] : 1.7 [연금] : 2.49	30~100억미만 : 4.9 100억이상 : 4.4	(건강보험료×율)								
50억이상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8.5	8.5	6.3				6.3	[건강] : 1.7 [연금] : 2.49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4.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6.55			
	7-12개월 (365일)	8.1	8.1	6.3	6.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0~100억미만 : 4.9 100억이상 : 4.4	(건강보험료×율)							
	13-36개월(1095일)	7.2	7.2	7.2	7.2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0~100억미만 : 4.9 100억이상 : 4.4	(건강보험료×율)
36개월초과(1096일)	6.6	6.6	7.4	7.4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0~100억미만 : 4.9 100억이상 : 4.4	(건강보험료×율)								
300억이상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8.0	8.0	6.1				6.1	[건강] : 1.7 [연금] : 2.49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4.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6.55			
	7-12개월 (365일)	7.6	7.6	6.1	6.1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0~100억미만 : 4.9 100억이상 : 4.4	(건강보험료×율)							
	13-36개월(1095일)	6.7	6.7	7.0	7.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0~100억미만 : 4.9 100억이상 : 4.4	(건강보험료×율)
36개월초과(1096일)	6.0	6.0	7.3	7.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0~100억미만 : 4.9 100억이상 : 4.4	(건강보험료×율)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8.0	8.0	6.1				6.1	[건강] : 1.7 [연금] : 2.49	50억미만 : 6.0 50~300억미만 : 5.5 300~1000억미만 : 4.9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6.55			
	7-12개월 (365일)	7.6	7.6	6.1	6.1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0~100억미만 : 4.9 100억이상 : 4.4	(건강보험료×율)							
	13-36개월(1095일)	6.7	6.7	7.0	7.0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0~100억미만 : 4.9 100억이상 : 4.4	(건강보험료×율)
36개월초과(1096일)	6.1	6.1	7.3	7.3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30~100억미만 : 4.9 100억이상 : 4.4	(건강보험료×율)								

<p>□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시 건설업의 분류(고용노동부 고시 제2014-37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신설, 기타건설, 철도·케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 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li> <li>○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li> <li>○ 철도 또는 케도신설 : 철도, 케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 송전선로</li> <li>○ 중건설 : 고계방(뱀)(높이20m이상의 제방,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터널(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의 인입통신구등) 신설공사</li> <li>○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정(조정관련 전문 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 등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는 타공사와 독립하여 행하는 공사에 한함.</li> </ul> <p>□ 적용기준 등(※ 상세 내용은 해당부처 고시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도급금액+도급자관급금액) 4천만원 이상 건설공사</li> <li>- 산재,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주택건설업자,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문화재수리업자)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5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li> <li>- 건강, 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공사착공일이 미정인 경우 1개월은 30일로 간주하여 계산</li> <li>-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li> <li>-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 이상 건설공사(국토교통부 고시 제2012-361호)</li> <li>-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최저가입찰대상공사, 기술제안입찰공사, 대안 및 일반 등 대형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li> <li>-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내역서에 표준품셈 등 원가계산에 따라 반영된 비용을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상기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li> </ul> <p>□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분리발주 여부와 무관)</p> <p>□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광열비, 복리후생비, 소도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p>	<p>□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최저가, 기술제안, 대형공사) ○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년) ○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년) ○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년)</p> <p>□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80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li> <li>○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li> <li>○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li> <li>○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 토목및산업설비 : 0.071%, - 건축 : 0.068% - 터키(대안)공사 : 0.084%(* 기술제안일 경우)</li> </ul> <p>□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재+직노+산출경비)×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331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건설업 - 건축공사 : 0.07% - 산업 환경설비공사 : 0.13%</li> <li>○ 전문건설업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 : 0.49% - 비계·구조물해체공사 : 0.39% - 석공사 및 철근·콘크리트공사 : 0.28% - 기계설비공사 및 기타 : 0.11% ※ 적용제외: 문화재 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li> </ul> <p>□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 적용</li> <li>• PQ 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토목, 건축 구분)</li> <li>• 수의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 적용</li> <li>• 기타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li> </ul> <p>□ 건축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단위: 미만~이상)</p> <p>1등급: 1100억원이상, 2등급: 1100억~850억원 3등급: 850억~500억원, 4등급: 500억~360억원 5등급: 360억~200억원, 6등급: 200억~120억원 7등급: 120억~82억원 * 추정금액 :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금액</p> <p>□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 지열공사, 소각시설 등</p> <p>□ 수의계약 시 1차 낙찰률, ( )은 2000.7.31.이전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 87.75%(85%)</li> <li>•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 86.75%(83%)</li> <li>•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 85.5%(80%)</li> </ul>
---	--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5년 토목·조경·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를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15.3.9 기초금액발표분부터

공사 규모	공사 기간	간접노무비			산재,고용 보험료 (노) × 울	건강,연금 보험료 (직노) × 울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재+직노+산경) × 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O도급자관급 미포함 : (재+직노)×울 O도급자관급 포함 : a,b중 작은 금액적용 a. (재+직노+도급자관급)×울 b. (재+직노)×울×1.2	환경보전비 (재+직노+산경) × 울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노+경+일) × 울
		(직노) × 울								(재+노) × 울		(재+노+경) × 울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토목	조경	산업설비(토목)	토목,조경 산업설비	전문공사	
50억 미만	6개월이하 (183일)	11.6	11.1	11.6	[산재보험료] : 3.8	[건강보험료] : 1.70 [연금보험료] : 2.49	[종합건설업] ·토목(토건) : 0.41 ·조경 : 0.13	5억 미만 ○ 일반건설 - 갑:2.93 을:3.09 ○ 특수 및 기타 : 1.85 ○ 철도 또는 궤도 : 2.45 ○ 중건설 : 3.43	○ 09 : 도로 (교량, 타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간척, 준설) - 오락·문화관광지역 설치하는 경우 ○ 08 : 항만(간척, 준설) - 오락·문화관광지역 설치하지 않는 경우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 03 : 주택(신축 경우)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 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체육관광공사	6.3 6.1 6.3 6.3 6.1 6.3 6.4 6.2 6.4 6.4 6.2 6.4 6.5 6.3 6.5 6.5 6.3 6.5 6.6 6.4 6.6 6.6 6.4 6.6 6.4 6.3 6.4 6.4 6.3 6.4 6.5 6.3 6.5 6.5 6.3 6.5 6.4 6.3 6.4 6.5 6.3 6.5	50억 미만 : 6.0	5억 미만 : 6.0	50억 미만 : 15.0		
	7~12개월 (365일)	11.1	10.6	11.1											
	13~36개월 (1095일)	10.2	9.7	10.2											
	37개월이상 (1096일)	10.4	9.8	10.4											
50억 - 3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8	10.2	10.8	[고용보험료] ○1등급: 1.39 ○2등급: 1.17 ○3등급: 0.97 ○4등급: 0.92 ○5등급: 0.89 ○6등급: 0.88 ○7등급이하: 0.87 ※조달청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4.12.30.공고)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건강보험료×울) 6.55	[전문건설업] · 056 : 준설,토공사 · 049 : 시설물유지관리, 도장공사, 포장공사, 상하수도설비 · 039 : 비계구조물해체 보강·그라우팅, 수중공사 · 028 : 석공사, 철근·콘크리트 · 011 : 그외	5억 - 50억 미만 ○ 일반건설 - 갑 : 1.86+5,349천원 - 을 : 1.99+5,499천원 ○ 특수 및 기타 : 1.20+3,250천원 ○ 철도 또는 궤도 : 1.57+4,411천원 ○ 중건설 : 2.35+5,400천원	○ 09 : 도로 (교량, 타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간척, 준설) - 오락·문화관광지역 설치하는 경우 ○ 08 : 항만(간척, 준설) - 오락·문화관광지역 설치하지 않는 경우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 03 : 주택(신축 경우)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 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체육관광공사	6.5 6.3 6.5 6.5 6.3 6.5 6.6 6.4 6.6 6.6 6.4 6.6 6.4 6.3 6.4 6.4 6.3 6.4 6.5 6.3 6.5 6.5 6.3 6.5 6.4 6.3 6.4 6.5 6.3 6.5	50~300억 미만 : 5.5	5~30억 미만 : 5.5	50~300억 미만 : 12.0		
	7~12개월 (365일)	10.3	9.7	10.3											
	13~36개월 (1095일)	9.4	8.8	9.4											
	37개월이상 (1096일)	9.5	8.9	9.5											
300억 - 1000억미만	6개월이하 (183일)	10.1	9.5	10.1	퇴직공제 부금비 (직노)×울 2.3	6.55	50억 이상 ○ 일반건설 - 갑:1.97 을:2.10 ○ 특수 및 기타 : 1.27 ○ 철도 또는 궤도 : 1.66 ○ 중건설 : 2.44	○ 09 : 도로 (교량, 타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간척, 준설) - 오락·문화관광지역 설치하는 경우 ○ 08 : 항만(간척, 준설) - 오락·문화관광지역 설치하지 않는 경우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 03 : 주택(신축 경우)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 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체육관광공사	6.4 6.3 6.4 6.4 6.3 6.4 6.5 6.3 6.5 6.5 6.3 6.5 6.4 6.3 6.4 6.5 6.3 6.5	300~1000억 미만 : 4.9	30~100억 미만 : 4.9	300~1000억 미만 : 10.0			
	7~12개월 (365일)	9.6	9.0	9.6											
	13~36개월 (1095일)	8.7	8.1	8.7											
	37개월이상 (1096일)	8.8	8.3	8.8											
1000억 이상	6개월이하 (183일)	10.2	9.7	10.2	유자격자명부 등록및운용기준 (2014.12.30.공고)	2.3	50억 이상 ○ 일반건설 - 갑:1.97 을:2.10 ○ 특수 및 기타 : 1.27 ○ 철도 또는 궤도 : 1.66 ○ 중건설 : 2.44	○ 09 : 도로 (교량, 타널, 활주로) ○ 04 : 플랜트(발전소,쓰레기소각로) ○ 05 : 지하철 ○ 15 : 철도 ○ 05 : 상하수도(폐수,하수처리장,정수장) ○ 18 : 항만(간척, 준설) - 오락·문화관광지역 설치하는 경우 ○ 08 : 항만(간척, 준설) - 오락·문화관광지역 설치하지 않는 경우 ○ 11 : 댐 ○ 06 : 택지개발 ○ 07 : 주택(재개발, 재건축 경우) ○ 03 : 주택(신축 경우) ○ 05 : 주택 외 건축 ○ 03 : 조경 ○ 08 : 기타토목(하천등) ※적용 제외 :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 문화체육관광공사	6.4 6.3 6.4 6.4 6.3 6.4 6.5 6.3 6.5 6.5 6.3 6.5	1000억 이상 : 4.4	100억 이상 : 4.4	1000억 이상 : 9.0			
	7~12개월 (365일)	9.7	9.2	9.7											
	13~36개월 (1095일)	8.8	8.3	8.8											
	37개월이상 (1096일)	9.0	8.4	9.0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25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5.6백만원+(직접공사비-140억원)×0.0264%]×공기(년)  
25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500억원(직접공사비) 미만 : [8.5백만원+(직접공사비-250억원)×0.0200%]×공기(년)  
500억원(직접공사비) 이상 : [13.5백만원+(직접공사비-500억원)×0.0140%]×공기(년)

-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 50억(추정가격)미만 : 0.081%, 50억~100억(추정가격)미만 : 0.080%, 100억~300억(추정가격)미만 : 0.075%  
(재+직노+산출경비)×울 300억(추정가격)이상 (최저가낙찰대상공사 포함) 토목 및 산업설비 : 0.071%, 건축 : 0.068%, 터키·대안공사 : 0.084%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적용기준고시(국토부고시 제2013-808호, 2013.12.20)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 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2012.6.26) 고시 요율 적용
-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금액 : 국토부 고시 제2013-331호(2013.6.18) 적용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 시 건설업의 분류 : 노동부고시 제2014-37호(2014.10.22) 참조
  - 일반건설(갑) : 건축건설, 도로건설, 기타건설, 철도·궤도의 보수복구공사, 기설로면에 레일만 부설하는 공사, 지하10m 이내 복개식으로 시공하는 지하도, 지하철도, 지하상가, 통신선로등 인입통신구 신설공사
  - 일반건설(을) : 기계장치공사, 삭도건설공사 ○ 철도 또는 궤도신설 : 철도,궤도신설(기설노반 또는 구조물에 한함) 및 그에 따른 역사·과선교,승선선로
  - 중건설 : 높이20m이상의 고제방(댐), 방파제, 안벽, 수력발전시설 신설공사 터널, 지하10m이상 복개식 지하철도, 지하도, 인입통신구(지하상가 및 통신선로 등) 신설공사
  - 특수 및 기타건설 : 준설, 조경(전문포함), 택지조성(경지정리포함), 포장의 단독발주공사에 한함[타공사와 병행하는 경우: 일반건설(갑) 적용]
- 비목별 공사규모 및 적용대상
  - 간접노무비 및 기타경비 : <재료비+직접노무비+산출경비>의 합계액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재료비(관급포함) + 직접노무비>의 합계액, 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금액) 4천만원이상 건설공사
  - 일반관리비, 이윤 : 추정가격 기준
    - 산재,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주택건설사업자,건설업자,전기공사사업자,정보통신공사사업자,소방시설업자,문화체육관광사업자) 다만, 총공사금액[(도급금액+관급재료)에서 부가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 시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4-5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738호)
    - 건강,연금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정산조건은 '06.12.29.입찰공고부터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사회보험의 보험료적용기준 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09.02.12.입찰공고부터 적용
    - 퇴직공제부금비 : 추정금액 3억원이상 건설공사(국토부 고시 제2012-361호)
    - 공사이행보증수수료 :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국가계약법시행령 제52조제1항), 시행령 제6장 및 제8장에 따른 공사계약인 경우
    - 환경보전비 :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8] 환경관리비 세부 산출기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요율 이상을 적용하여 계산하되, 표준샘플 등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한 환경보전비를 포함한다.

- 토목공사 유자격자 등급별 금액(추정금액기준)
  - 1등급 : 1500억이상, 2등급 : 1500억~850억이상
  - 3등급 : 850억~500억이상, 4등급 : 500억~360억이상
  - 5등급 : 360억~200억이상, 6등급 : 200억~130억이상
  - 7등급 : 130억~82억이상
  - ※ 추정금액=추정가격+관급액+부가세
- 기타경비 항목 : 수도관설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사무용품비, 여비·교통통신비, 세금과공과, 도서인쇄비,
- 산업설비(토목) 해당공종 : 수처리시설(오폐수,하수처리, 분뇨처리, 정수장) 등
- 2000.7.31이후 수의계약시 1차 낙찰율 ( )7.31이전
  - 추정가격10억미만으로 87.75%(85%)미만인 경우:87.75%(85%)
  - 추정가격10억~50억미만으로 86.75%(83%)미만인 경우:86.75%(83%)
  - 추정가격50억~100억미만으로 85.5%(80%)미만인 경우:85.5%(80%)
- 고용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고시 제2013-738호)
  - 일반(등급)공사 : 해당등급 요율적용
  - PQ,설적대상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토목,건축구분)
  - 수의계약대상 : 해당업체 시평액의 등급 요율적용
  - 기타 공사 : 공사금액에 따라 해당등급 요율적용
- 전기·통신·소방·전문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 요율을 제외한 각종 제비율은 주 공종을 따라 적용